

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: 2026년 07월 14일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
피델리티 차이나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차이나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Plus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주요변경내용:
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 - 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9 영업일</u>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9 영업일</u>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9 영업일</u>)에 매수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7 영업일</u>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7 영업일</u>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7 영업일</u>)에 매수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부 칙 (2026.07.14)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에 대한 예외 문구 삭제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10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)까지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 다만, 제 2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부 칙 (2026.07.14) 제 1 조 (시행일)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...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2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
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매수한다.	
제 43 조의 2 (분배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제 7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제 5 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칙	신탁계약 체결 변경	-	<u>부 칙 (2026.07.14)</u>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</u> <u>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</u> <u>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</u> <u>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2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에 대한 예외 문구 삭제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 전환대상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

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에 대한 예외 문구 삭제	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</u>에 환매한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<u>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10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)까지 환매한다.</u>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</u>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</u>에 매수한다. 다만, 제 2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한다.	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</u>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</u>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</u>에 매수한다.
제 43 조의 2 (분배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<u>제 7 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5 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부 칙 (2026.07.14) 제 1 조 (시행일)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7 조의 3 (전환 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u>부칙 (2026.07.14)</u>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0 조 (수익 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기재 명확화	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: 투자자 자격에 제한 <u>없음</u> 2. 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<u>투자자</u> (...)	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: 투자자 자격에 제한 <u>없으며</u> , <u>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</u> 2. 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<u>경우로서</u> , <u>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</u> (...)
제 22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<u>제 8 영업일</u> 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<u>제 9 영업일</u> 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 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<u>제 7 영업일</u> 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7 조의 3 (전환 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 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<u>제 7 영업일</u>)에 환매한다.
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	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제 43 조의 2 (분배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제 7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제 5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u>부 칙 (2026.07.14)</u>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7 조의 2 (전환 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u>부 칙 (2026.07.14)</u>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2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7 조의 2 (전환 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)	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시 전환처리일 변경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	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환매한다. 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6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매수한다.
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매수한다.	
제 43 조의 2 (분배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제 7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제 5 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u>부 칙 (2026.07.14)</u> <u>제 1 조 (시행일)</u> <u>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</u> <u>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</u> <u>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</u> <u>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...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차이나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조 (목적 등)	기재 수정	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<u>집합</u>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 <u>신탁</u>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0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 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 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부 칙	신탁계약 체결	-	부 칙 (2026.07.14) 제 1 조 (시행일)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차이나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조 (목적 등)	기재 수정	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<u>집합</u>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 <u>신탁</u>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0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 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 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42 조의 2 (분배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제 7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제 5 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칙	신탁계약 체결	-	부 칙 (2026.07.14) 제 1 조 (시행일)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...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분배금 지급일 변경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Plus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0 조 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6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42 조의 2 (분배 금)	분배금 지급일 변경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포함)부터 제 7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	(...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(당일 포함)부터 제 5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.
부 칙	신탁계약 체결 변경	-	부 칙 (2026.07.14) 제 1 조 (시행일)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(...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